

제규정 관리규정

(제정 1987. 6. 17.)

(전부개정 2018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에서 시행하는 제규정의 제정, 개정, 폐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① 제규정이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본교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대학헌장, 학칙, 규정, 세칙, 내규 및 지침 등의 모든 규범을 말한다.

② 대학헌장이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대학의 교육이념과 교육목적 등에 대한 원칙을 선언한 규범을 말한다.

③ 학칙이란 법령 및 정관, 대학헌장에 따라 본교의 교육목표, 조직 및 학사운영 등 대학운영에 기본이 되는 규범을 말한다.

④ 규정이란 법령 및 정관, 대학헌장, 학칙에 따라 본교의 조직, 업무 수행 방법, 행정 운영 절차 등 업무 처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.

⑤ 세칙이란 학칙 및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.

⑥ 내규란 규정이나 세칙이 정한 범위에서 업무 처리의 절차, 방법, 그 밖의 기준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.

⑦ 지침이란 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일된 절차 및 방법 등의 기준이 되는 사항을 정한 규범을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 제규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2장 구성 및 형식

제4조(구성) 제규정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함을 원칙한다.

1. 총칙은 규정의 목적, 적용범위, 용어의 정의, 그 밖에 총괄적인 사항을 서술한다.
2. 본칙은 각 조문의 명칭 및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적 사항 또는 절차 등의 구체적 내용을 서술한다.
3. 부칙은 시행일,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, 기존 규정과의 관계, 효력기간 등을 그 필요에 따라 명시한다.

제5조(형식) ① 제규정은 장, 절, 조, 항, 호, 목의 순으로 편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장과 절을

생략할 수 있다.

② 규정의 형식을 세분화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한다.

1. 장 : 제1장, 제2장, 제3장……
2. 절 : 제1절, 제2절, 제3절……
3. 조 : 제1조, 제2조, 제3조……
4. 항 : ①, ②, ③……
5. 호 : 1, 2, 3……
6. 목 : 가, 나, 다……

③ 문자는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한자·외국어를 혼용할 수 있으며,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표시한다.

④ 별표, 별지 서식 등은 부칙 다음에 별도로 기재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순서는 별표를 먼저 기재하고 다음에 별지 서식을 기재한다.

⑤ 부칙의 조문은 ①, ②, ③, …으로 표시한다. 다만, 그 조문이 한 개일 때에는 앞의 번호를 생략한다.

제6조(표시) ① 제규정의 제정일은 규정 제목 다음 줄의 우측에 “(제정 0000.00.00.)” 이라 표시한다.

② 규정의 일부를 신설할 경우 신설하는 장, 절, 또는 조문 말미에 “<신설 0000.00.00.>” 이라 표시한다.

③ 규정의 일부를 개정할 경우 개정하는 장, 절, 또는 조문 말미에 “<개정 0000.00.00., 0000.00.00.>” 이라 개정일을 연속하여 표시한다.

④ 규정의 일부를 삭제할 경우 기존의 장, 절, 조, 항의 표시는 그대로 남겨 두며 그 본문(장과 절의 경우에는 그 명칭)을 삭제한 후 “<삭제 0000.00.00>” 라 표시한다.

제3장 제정, 개정 및 폐지

제7조(입안) ①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입안은 업무 소관부서에서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입안내용을 작성한 후 기획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규정의 내용이 다른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.

② 대학 행정 및 학사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, 교무 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한 후에 입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 기획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 소관부서에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를 위한 입안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필요에 따라 직접 입안할 수 있다.

④ 기획처는 입안된 규정안에 대하여 내용의 타당성, 상위 규정과의 저촉관계, 기존 규정과의 모순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업무 소관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이를 수정할 수 있다.

⑤ 기획처장은 규정입안서를 접수한 후 1개월안에 이를 규정검토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. 다

만,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약식검토로 갈음할 수 있다. <신설 2020.9.11.>

제8조(공람) ① 입안된 규정안은 교원, 직원, 조교 및 학생 등 대학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내통신망에 일정기간 공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「학칙」 및 「대학평의원회 운영규정」에 대하여는 본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함께 공람하여야 한다. <개정 2020.9.1.>

②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안된 규정안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
제9조(확정) ① 대학헌장 및 학칙은 기획처의 검토와 교무위원회 및 대학평의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② 규정은 기획처의 검토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③ 세칙 및 내규는 기획처의 검토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④ 지침은 기획처의 검토를 거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⑤ 세칙 및 내규 이상의 규정은 규정검토위원회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. <개정 2020.9.11.>

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, 기획처장은 전항의 절차에 관계없이 일정기간 공람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일괄 수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0.9.11.>

1.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
2. 오탈자, 띄어쓰기 등 어구 표현의 수정
3. 법제처의 「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규정 체계, 문장, 표현 등의 정비

[본조개정 2020.9.1.]

제10조(효력) ① 제규정은 별도로 시행일을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의 결재를 받은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된다.

② 법령 및 정관에 저촉되는 제규정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효력을 상실한다.

③ 제규정의 서열은 제2조의 순서에 따르며, 상위 규정이 하위 규정에 우선한다. 하위 규정이 상위 규정에서 정한 내용에 어긋나는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.

제4장 운용 및 관리

제11조(주관부서) ① 제규정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처에서 주관한다.

② 기획처장은 제규정을 본교 홈페이지 및 그룹웨어의 규정집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12조(해석) ① 제규정은 주관적이거나 유추적인 해석을 할 수 없다.

② 제규정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기획처장의 해석에 따른다. 다만, 부서 간 책임 한계의 구분, 그 밖의 중대한 사항에 관한 경우에는 총장의 결재를 받아서 해석한다.

제5장 규정검토위원회

제13조(설치)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정검토위원회를 둔다. <신설 2020.9.11.>

제14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기획처장이 된다.

③ 위원은 학장 2명을 포함하여야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

[본조신설 2020.9.11.]

제15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.

1. 제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(안)에 관한 사항

2. 규정 체계 검토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자문에 관한 사항

3. 그 밖에 총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[본조신설 2020.9.11.]

제16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[본조신설 2020.9.11.]

제17조(학과규정) ① 각 대학(원) 및 학과(전공)(이하 “학과”라 한다)는 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규정(이하 “학과규정”이라 한다)을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 학과규정의 명칭은 “○○학과 ○○ 운영규정” 또는 “○○학과 ○○ 운영내규” 등으로 할 수 있다.

③ 학과규정의 제정, 개정 및 폐지는 학과 교수회의에서 심의 및 의결한다.

④ 학과의 장은 학과규정을 기획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2021.3.4.]

부 칙

① (시행일) 이 규정은 1987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전에 제정된 규정은 이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06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규정 입안서

1. 입안 부서:
2. 규정의 명칭:
3. 입안의 구분: 제정(), 개정(), 폐지()
4. 입안의 사유
5. 주요 내용
6. 기대 효과

붙임:

0000년 00월 00일

000000장

기획처장 귀하

[별지 제2호 서식]

0000000규정 신구조문 대비표

현	행	개	정 (안)	비 고
제0조(00000)		제0조(00000)		
		부 칙		부칙 추가
		이 규정은 0000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.		